서울특별시성북구 공고 제2015-　　호

2015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(안)

『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공시합니다.

2015. 9. 30.

성 북 구 청 장

1. 2015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

가. 공시대상 :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·증축, 토지의 분할·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

나. 공시(가격) 기준일 : 2015년 6월 1일

다. 개별주택수 : 211호

라. 공시사항 : 개별주택의 지번, 면적, 가격(개별내용 생략)

마. 열람장소 : 세무1과, 동주민센터, 성북구·서울시 홈페이지

2. 이의신청 방법

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3. 시행일

이 공시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